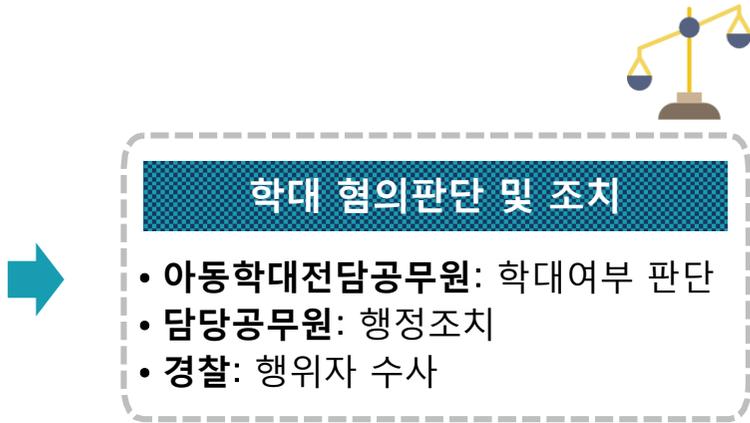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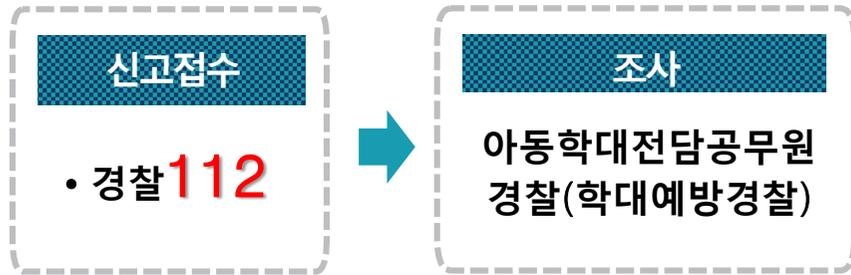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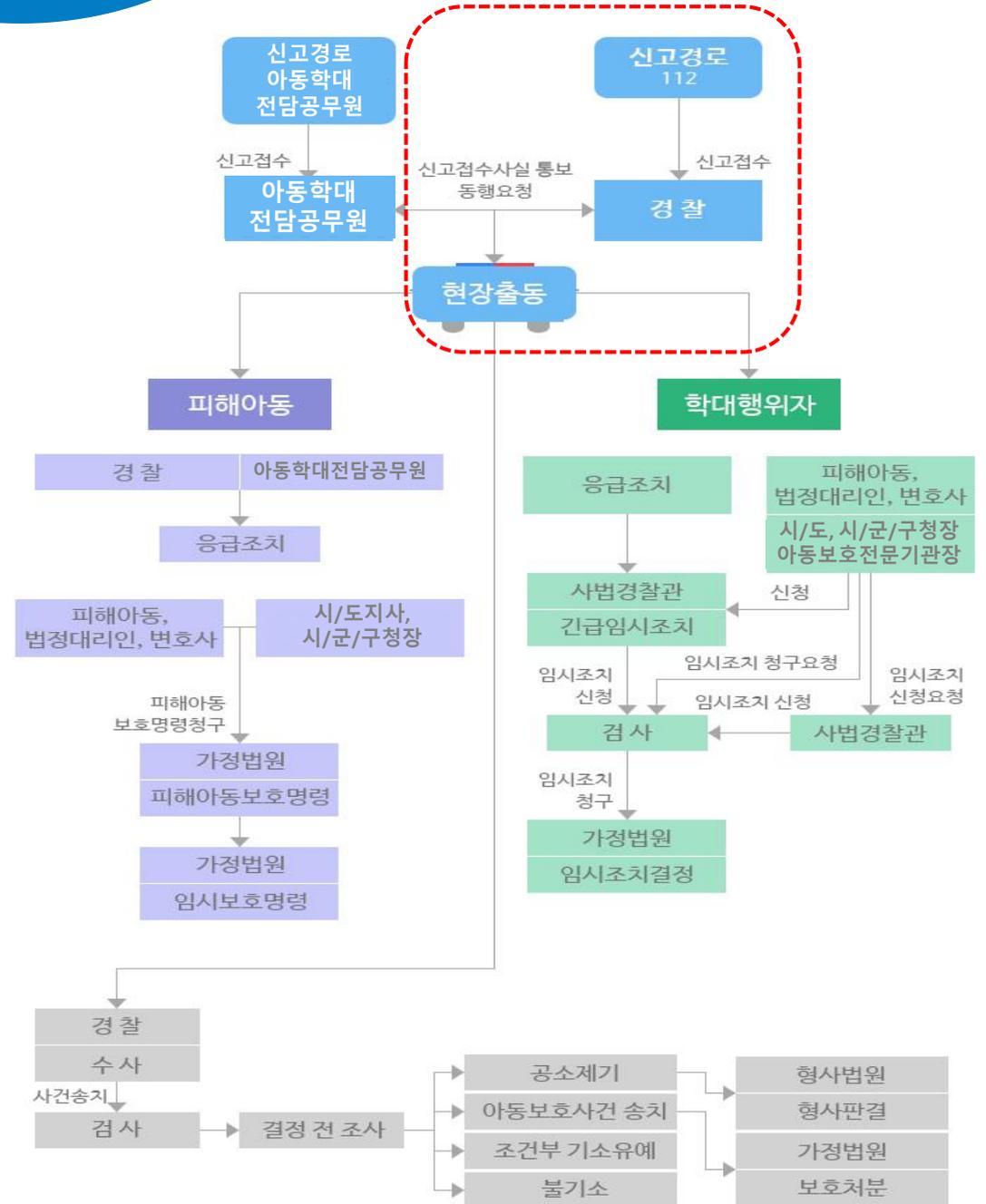


## 아동학대 신고-조사 절차



학대사례 판단 시,

- 피해아동: 원가정 보호, 응급조치
- 학대행위자: 행위제지(가정), 임시조치(고소고발)



## 아동학대의 신고의무

###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? (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제2항)

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✓ **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**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를 부여

###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(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)
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에 해당하는 사람의 **자격 취득과정**이나 **보수교육과정**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함.

## 아동학대의 신고의무

###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5개 직군

- 아동권리보장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
- 아동복지시설
- 아동복지전담공무원
-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
- 건강가정지원센터
- 다문화가족지원센터
- 사회복지전담공무원(20.10.1.부터), 사회복지복지시설
- 성매매피해상담소
- 성폭력피해상담소, 성폭력피해보호시설
- 119구급대 대원(20.10.1.부터)
- **응급구조사**
- 육아종합지원센터, 어린이집
- 유치원
- 아동보호전문기관(20.10.1.부터)
- **의료인 및 의료기사**
- 장애인복지시설
-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의료기관, 정신요양시설, 정신재활시설
-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 단체
- 청소년 보호/재활센터
- 초·중·등교육법의 학교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
- 학원 및 교습소
- 아이돌보미
-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
- 입양기관

## 아동학대 신고의무

### 관련 벌칙(아동복지법 제75조 3항 1의2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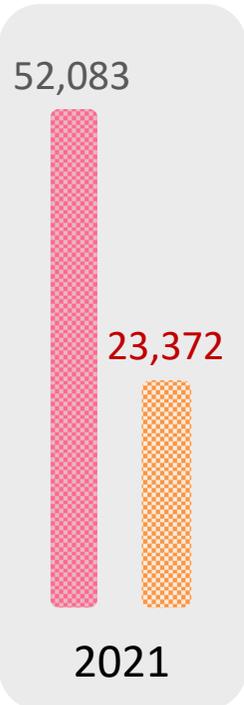
- 제26조 제3항 (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·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)을 위반하여 **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

### 관련 벌칙(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 제1항 제2호)

- **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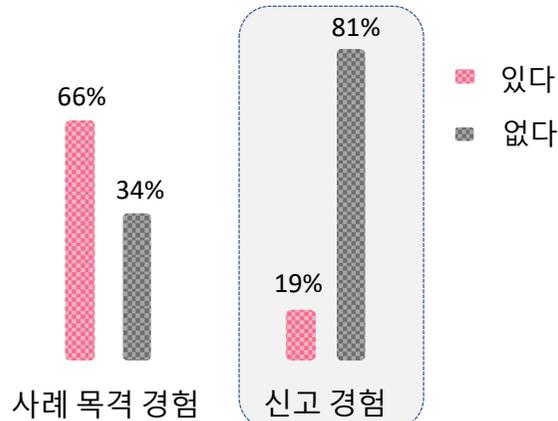
## 아동학대 신고의무

### 신고 의무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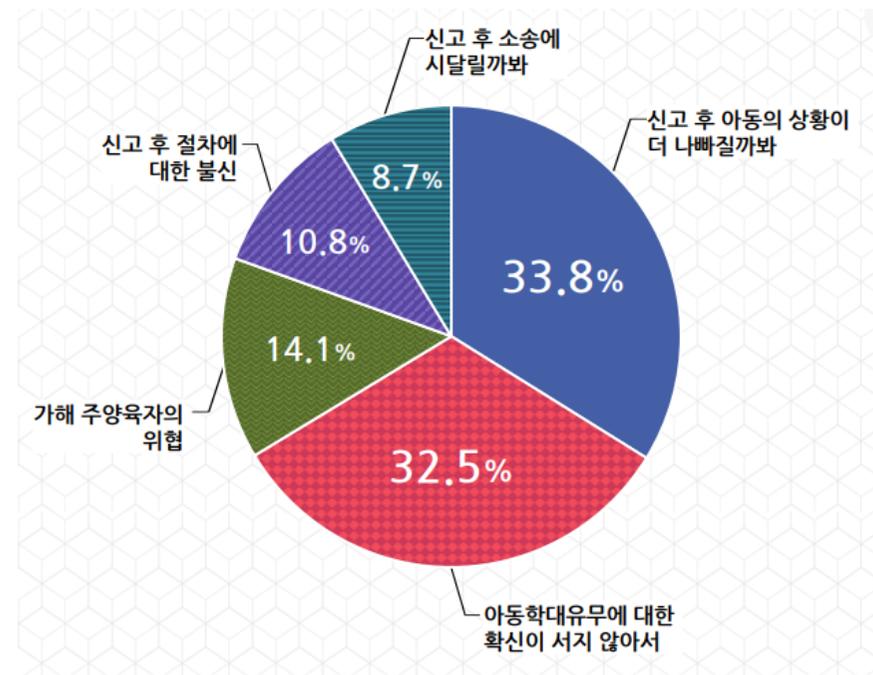


- 아동학대 의심신고건 : 52,083
- 신고 의무자 신고건수 : 23,372

#### 아동학대 사례 목격 및 신고 경험



###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



\* 출처:한겨레, '상황 나빠질까봐, 확신없어서 .. 교사 60% 아동학대 신고 망설였다.' 2021.01.11(실천교육교사모임, '아동학대 관련 조사')

##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

“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(아동학대처벌법제 10조의2)”

**아동학대처벌법** (제10조제3항, 제10조의2, 제10조의3, 제62조제2항, 제62조의2)

**공익신고자보호법** (제12조제1항, 제13조제1항)

**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** (제 7조~13조)

-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됨  
→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불이익조치(파면/해임/해고 등)를 해서는 안됨 →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법적 처벌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기재생략, 신변안전조치, 열람제한 가능
-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 요구 가능

## 아동학대 발견하기

### 관련 벌칙

#### 신체학대



넘어져서 생기기 어려운 부분의 상처, 할퀴거나 손으로 맞은 것 같은 자국



체벌 도구가 그대로 드러나는 상처



대부분의 화상 자국은 아동학대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함.  
(뜨거운 물, 다리미 자국 등)



✓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



## 아동학대 발견하기

### 정서학대

#### 정서학대

- 귀가, 거부, 우울, 좋지 못한 언행 사용 등
- 폭언, 모욕, 감금, 심각한 비교 등을 하는 경우 모두 해당

✓ 발견이 어려워 아동을 유심히 **관찰**해야함

#### 방임

- 위생상태 불량, 계절에 맞지 않는 옷, 영양실조
- 몸에 머릿니, 빈대 등이 있는 경우
- 학교나 병원을 보내지 않는 경우

✓ 아동의 위생상태나 의복, 냄새 등으로 **확인**이 가능함



## 아동학대 발견하기

### 성학대

#### 성학대

- 연령대에 맞지 않는 성지식과 행동(성놀이)을 보임
- 죄의식에 사로잡힌 자책 행동을 보임
- 섭식장애
- 평소와 다른 행동, 좋아하던 것에 관심이 없음
- 어른에 대한 갑작스런 거부
- 악몽 등 수면장애

- ✓ 아동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상담하지 말고 바로 **112** 신고
- ✓ 발견 상태 유지를 위해 옷을 갈아입히지 않고 씻기지 않기
- ✓ 아동의 잘못이 아님을 말해 주기
- ✓ 캐묻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대하기

## 아동학대 발견하기

### 신체적 징후 및 행동적 징후

#### 신체학대

- 어른과의 접촉회피
-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
-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
- 부모에 대한 두려움
-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
-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
-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
-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
-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
-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
- 담배 불 자국,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
- 회음부에 있는 화상자국
- 알고 있는 물체모양(다리미 등)의 화상자국
-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
- 입(술)/잇몸/눈/외음부 상처, 긁히거나 물린 상처
- 손목/발목 긁힌 상처, 영유아에게 발견된 긁힌 상처
-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

- 거드랑이/팔뚝 안쪽/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
- 대뇌 출혈/망막출혈/양쪽 안구 손상 /머리카락이 뜯겨 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
-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
- 골격계 손상, 시간차가 있는 골절,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, 복합 및 나선형 골절, 척추 손상 (특히, 여러 군데의 골절), 영·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, 회전상 골절, 건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, 골막하출혈 방사선 사진, 골단 분리, 골막 변형, 골막 석회화
- 간혈종/간열상/십이지장 천공/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, 폐 좌상/기흉/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

#### 성학대

##### [성적 행동지표]

-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
-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
-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
-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
- 동물/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상호관계

##### [신체적 지표]

- 학령 전 아동의 성병감염
- 임신

##### [생식기의 증거]

-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
-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, 질의 홍진
- 배노곤란
- 요도염, 생식기의 대상포진

##### [항문증후]

- 항문 괄약근의 손상, 항문주변의 염
-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
-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, 항문이 좁아짐
-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
- 변비, 대변에 혈액이 나옴

##### [구강증후]

- 입천장의 손상, 인두 임질(pharyngeal gonorrhoea)

#### 정서학대

-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
- 신체발달저하

#### 방임

-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
- 비위생적인 신체상태
-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
-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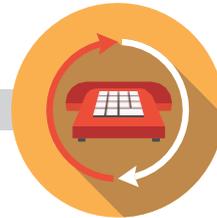
## 아동학대 신고하기



학대의심징후  
(상흔, 증언 등)  
발견



응급상황 시,  
아동의 안전 확보



아동학대 신고  
112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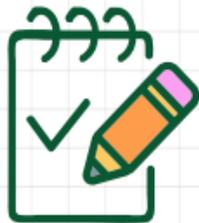
아동학대 조사 및  
사례 개입 협조



사후 지원 및  
서비스 협조

## 아동학대 의심(징후)

## 체크리스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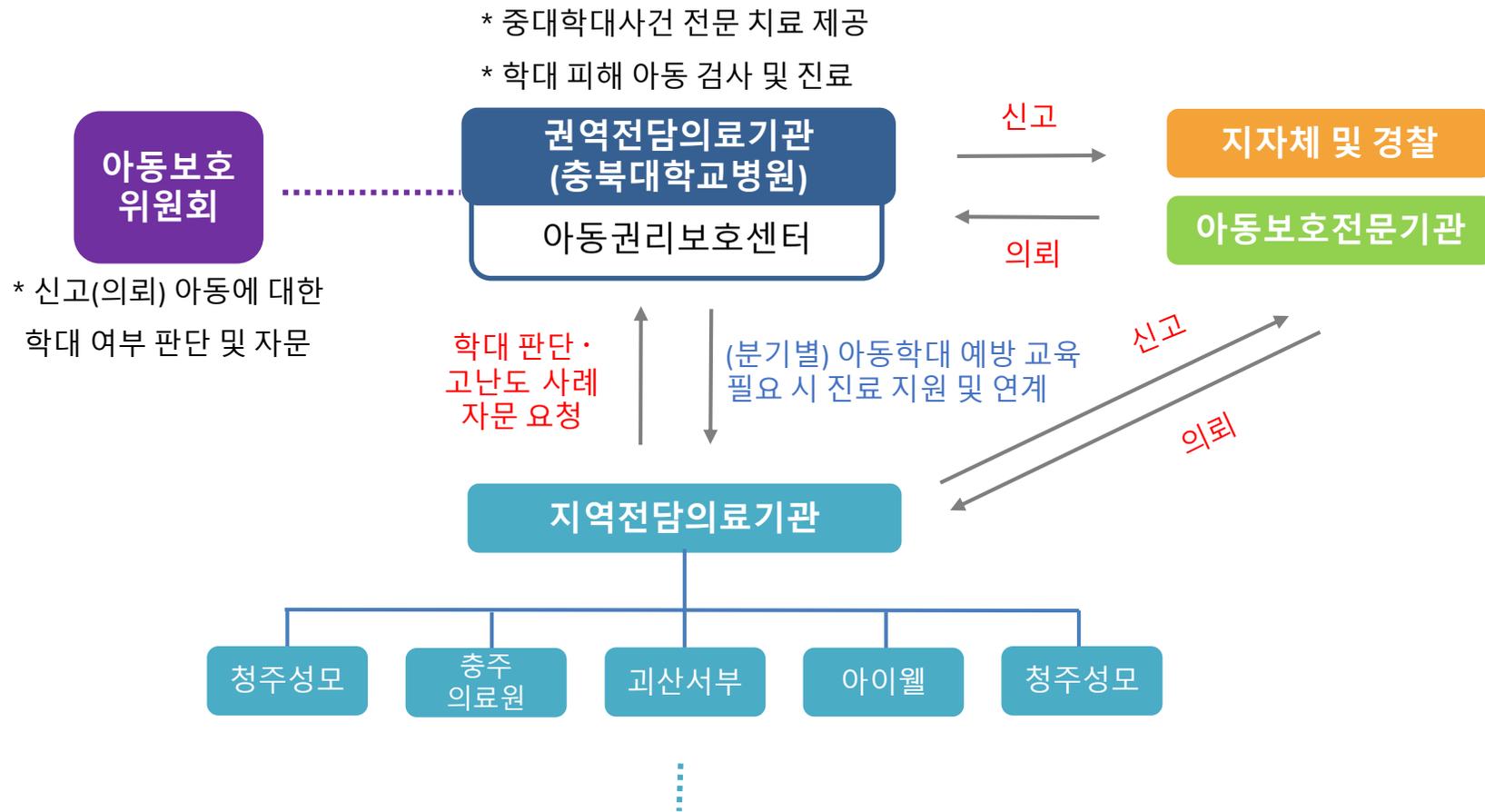
-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.
-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혹은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.
-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.
-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,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.
-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, 억제,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.
- 기아, 영양실조,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.
- 계절에 맞지 않는 옷,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.
-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.
-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.
-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.
-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.
-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혹은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.
-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보이고, 집(보호기관)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 한다.
- 아동이 매우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.

1개 문항 이상 “예” 라고 체크된 경우,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.

**아동학대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**

## 고난도 학대 사례 의뢰하기

충청북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원체계



## 충북대학교병원 아동보호위원회

충북권 아동학대 광역 전담의료기관

## 1. 충북대학교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주요 업무

“가장 중요한 목표는 피해아동의 조기 발견 및 신체적·심리적 회복 지원”

- 직무 수행 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되는 경우 **지자체 및 수사기관에 신고**

피해아동 발견  
및 신고

- 피해아동의 신체적, 정신적, 경제적, 심리사회적 상태에 대한 평가 및 치료

피해아동 평가  
및 진료

- 수사·조사 및 사례관리 단계에서 **수사협조 및 학대 가능성 판단**
- 피해아동 치료에 대한 **자문 제공 등 협조**

학대사례 자문



## 충북대학교병원 아동보호위원회

충북권 아동학대 광역 전담의료기관

### 아동학대 사례 의뢰 프로세스



> 원내 직원

- 1) HIS - MEMU - 아동학대 검색
- 2) 신고(자문)의뢰서 작성 및 의뢰

사례 발견  
(112 신고)

의뢰서  
작성

아동보호  
위원회  
의뢰

사례  
회의

수사협조  
자문 및 소견  
진료 지원

> 타기관 (의료기관, 지자체, 경찰, 아동보호전문기관 등)

- 1) 충북대학교병원 홈페이지 - 아동권리보호센터 의뢰서
- 2) 의뢰서 작성 후 공문과 함께 발송 **\*유선문의!**

Phone : **043-269-7654, 6959**(응급실)

FAX. 043-269-7609

E-MAIL : cbnuhchild@gmail.com



## 충북대학교병원 아동보호위원회 충북권 아동학대 광역 전담의료기관

### 아동학대사례 의뢰 및 진행 절차



#### 사례 발견



- 고난도 학대 사례에 대한 의학적 자문 및 소견, 학대 가능 여부에 대한 사례 심의
- 학대피해아동 시설입소검사, 중증 아동에 대한 치료 지원 사례 논의 및 진료 의뢰
- **의뢰기관 : 아동학대전담공무원, 아동보호전문기관, 학대예방경찰관 등**

## 아동학대 신고시 유의사항

## 유의사항

- 가능하면 증거사진 확보하기
- ※ 촬영시 아동 얼굴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촬영.
- 아동을 일상적으로 대하기
- 성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발견 상태 유지하기
-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학대상황에 대해 계속 묻지 않고 112 신고하기
- 아동학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
- 신고 내용을 미리 알려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기



## 신고양식 예시

### 1. 아동 대면 가능한 장소 정보:

주소 가장 중요!

### 2. 학대가 의심되는 이유/상황

응급상황 여부

신속출동 판단위해 구체적인 응급상황 설명

-경찰: 10분 이내 우선 출동 가능

### 3. 아동의 인적 사항:

이름, 성별, 나이, 특징

### 4. (의심되는)학대행위자

모를 경우 '미상'으로 신고

### 5. 신고자 요청 사항

면담 시 주의 사항, 신변 보호 요청 등



## 신고 관련 Q &amp; A

1. 신고하면 어떤 경찰관이  
출동하나요?

**즉시 출동**

- '지구대'의 '지구대경찰'

**시간 여유가 있다면**

- '경찰서'의 '사복 전담 형사' 요청
- '아동학대전담공무원' 동반 요청 가능

2. 신고했음을 학대행위자/가족  
에게 고지해도 되나요?

**불필요하며, 부적절함**

- 진술 오염 우려:  
거짓 진술을 준비할 시간제공
-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 노출하지 않기



## 신고 관련 Q &amp; A

3. 아동학대 조사와 판결은  
누가 어떻게 하나요?

**조사/확인**

- 아동학대전담공무원, 경찰의 역할

**최종 판정**

- 경찰/검찰 수사, 법정 신고에 달려 있음

4. 신고자 신변안전은  
어떻게 보장되나요?

**명백한 학대 선언,  
범인 지목 필요 없음**

**명백한 진술이 없다면 가해자는 미상으로  
신고 가능**

- 산불 신고와 동일한 경우임

**개인적 보복에 대한 우려**

**신변 보장 신청 가능**

- 112로 신고하여 처벌 가능
- 공익신고자 보호법
- 아동학대 처벌법



## 신고 관련 Q &amp; A

5. 신고 후에 아이를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?

**아동학대 상황이 의심스러운 경우**

- 신속한 신고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개입

**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면**

-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하기까지 아동을 보호하고 있을 것을 권유

6. 조사 시 어떤 협조가 필요한가요?

**알고 계시는 모든 정보를 제공**

- 증언/폭로, 가족 관계, 의심되는 가해자 등

**피해 아동의 보호**

- 가능하다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



## 신고 관련 Q &amp; A

7. 학대행위자는 무조건  
처벌을 받나요?

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 
아동학대 처벌대상이 될 수도,  
상담/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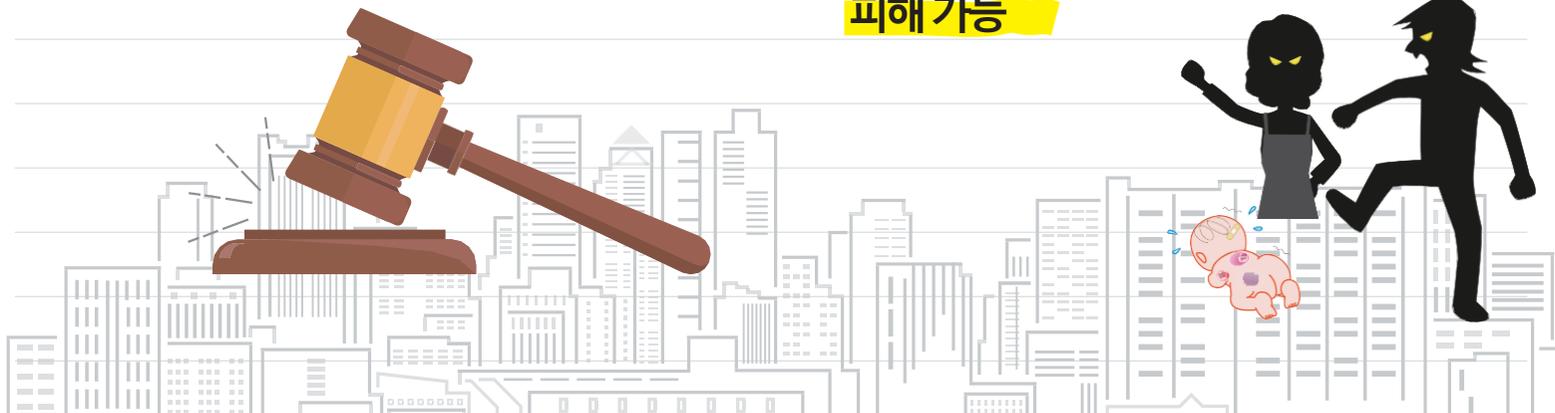
아동학대범죄 모두가  
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음.

8. 아동학대 신고사례에 대해  
언론인터뷰 요청이 오면  
응해도 되나요?

피해아동 개인정보 및 신고인의 신분을  
알 수 있는 내용 보도는 위법

• [아동학대처벌법 제 10조 3항, 제 35조]

언론보도로 신고자, 피해자 2차  
피해 가능



## 마치며

### 아이지킴콜 112앱이란?

# 아이지킴콜 앱 소개



-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, 신고의무 강화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도모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앱입니다.
-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가 담겨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-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'아이지킴콜' 또는 '아동학대'를 검색해보세요.

